

# 망실재산환수 대책팀 '가동'

## 조계종 전국 844곳 공찰 주지 위임받아 착수

### 올·내년 '특조법' 기간동안 마무리 방침

조계종이 잃어버린 삼보정재 되찾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재무부(부장 정만)를 중심으로 3월부터 산하 사찰들의 망실재산환수를 위한 대책팀을 운영한다. 대책팀은 전국 844곳 공찰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조사권을 위임받게 되며,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기본적인 조사작업을 마무리한다.

이전에도 스님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망실재산 찾기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종단이 체계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망실재산이란 역사적 기록 등에 의해 사찰 소유로 추정되지만 소유권이 불명확해지면서 국가나 개인

들에 수용된 부동산, 행정자치부 전산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망실여부가 확인되면 대책위는 해당사찰과 공동으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되찾게 된다.

지난해 12월 군포 수리사(주지 성견)가 2년간의 재판 끝에 찾은 '무주부동산'을 종단 재산으로 등록했다. 무주부동산은 등기부에 소유주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재판 승소로 사찰이 시가로 16억원 상당의 886평을 되찾았다.

2004년에는 파주 봉암사 주지 명고 스님이 3년간의 노력 끝에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망실재산을 찾아내기도 했지만 모두 개인적 원력차원에 머물렀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등기 이전절차가 간소화 된다. 특별법은 지난 1984년, 1994년에 이어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이전에는 종단의 행정력 미비로 특별법 시행기간 동안 오히려 토지 브로커들에게 종단 부동산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계종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대책팀 활동은 유실 또는 관리되지 못한 종단 재산의 체계적 정비 목적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찰 주지스님들은 대책팀이 제공하는 자료를 면밀히 대조 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02)2011-1752 **조용수기자**

# 방송·언론 속 불교 왜곡 없어야

##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출범, 위원 7명 위촉

前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손석준 씨 등 방송·언론인 7명이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위원장 동선)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14일 문호선(MBC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정호식(MBC PD), 이강택(KBS PD), 오기현(SBS PD), 이승훈(EBS 정책기획실), 손석준(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 이희용(연합뉴스 기자) 씨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미디어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관 스님은 이날 신임 위원들에게 "조계종의 존지가 훼손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사회 문화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 및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 미디어를 통한 불교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기존 조계종 자원위원회를 미디어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위원에 위촉된 정호식, 손석준, 이형범, 이승훈, 이희용 씨(사진 왼쪽부터, 세번째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미디어위원회는 향후 부처님오신날 특집프로그램 자문, 전통불교문화 관련 각종 프로그램 자문, 불교관련 현안문제에 대

한 미디어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천주교의 경우 1967년부터 이미 천주교 매스컴위원회를 설립운영 해왔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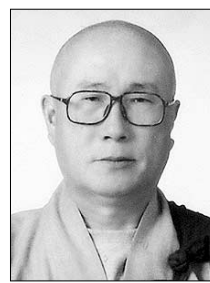
# 용주사 주지후보 정호 스님 선출

## 14일 산중총회서

조계종 제2교구 분사 용주사 주지 후보에 정호 스님이 선출됐다. 2월 14일 용주사 신임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선거인 108명이 참석, 산중총회법에 따라 투표없이 단독 입후보한 정호 스님을 새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정호 스님은 3월 초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월 12일부터 공식입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호 스님은 1973년 전장 스님을 은사로 용화사에서 출가, 75년 법주



사에서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인현 용화사 법보선원 수선안거 등 제방 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이다. 선출 후 중앙선관위 진기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공스님 명의의 당선증을 현장에서 교부했다. **조용수 기자**

# 종단역사 바로잡기 나섰다

## 조계종 '불교사연구회' 발족, 세미나·자료정리 등 계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가 근현대 불교사 및 종단사를 연구하기 위해 '불교사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불교사연구위원회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불교사연구 사업 자문과 의견 개진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불교사연구위원회는 올 6월과 10월 △일제하의 조계종단(전일, 조계종 성격, 선학원의 역사성) △불교정화운동(이념, 성찰 등)

△근대불교의 선원, 강원, 수행 및 교육 △개항기의 문제(산중불교에서 도회지 불교로 전환기) △1950-60년대 조계종단과 개신교의 비교 △조계종 종조문제(도, 태고 등) 등을 중심 내용으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사연구위원회는 또 성수, 원명, 도천, 수진, 범행, 석정 스님 등 종단 원로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사 관련 구술 녹취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종단, 교단사와 관련된 자료나 서적, 문건, 성명서, 일기, 사

친 등을 수집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고종사>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불교사연구위원회는 법진 스님(중앙총회 사무처장·불교학), 고영섭(동국대·불교학) 황인규(동국대·역사학) 김상영(중앙승가대·역사학) 한상길(동국대·역사학)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역사학) 이재현(한국정신문화연구원·종교학) 한종민(수원시 전문위원) 김광식(박사부천대·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이, 객원위원으로 박범석 김성욱 씨가 각각 위촉됐다.

남동우 기자

## 종단법 사무국장에게 수암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 스님은 2월 14일 신임 사무국장에게 수암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수암 스님은 1986년 부산대 재학 중 수석에서 설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 89년 자운 스님에게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강원을 졸업하고 흥성 용봉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조용수 기자

# "듣던 것 이상으로 훌륭해요"

## 버시바우 대사, 해인사방문 법진스님 예방

알래스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2월 11일 법보종찰 해인사를 방문했다. 리사 버시바우 미 대사 부인, 돈규 심슨 미국대사관 공보 참서관 등 7명의 일행과 함께 오전 10시 30분 경 해인사를 방문한 버시바우 대사는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의 안내로 대적광전을 참배한 뒤 퇴실당에서 조계종 종정 법진 스님을 진견했다.

법진 스님은 "한국생활이 힘들지 않느냐"며 미 대사일행을 환대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어느 곳에서나 외교생활은 힘들며, 적응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대답한 뒤 "미국에서 서적관

배지선 기자

# 중앙승가대에 승가학연구원 설립

승가학연구원이 김포 중앙승가대 내에 설립된다. 조계종 총립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지관)은 2월 13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72차 이사회를 열고 승가학연구 목적의 승가학연구원을 설립을 승인했다.

승가학연구원은 불교관련 학술지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불교학 연구를 활성화에 나선다. 지관 스님의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신임 이사에게 당면적으로 교육원 교육부장 법진 스님을 선출하고, 올해 예산 32억 6천여만 원을 승인했다.

조용수 기자

## 제31기 행사교육원 공고

### 3월24일까지 교육원 등록해야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연명제한 50세 환원후 첫 적용되는 제31기 행사교육원 입교대상자 등록을 공고했다.

올 8월로 예정된 제31기 행사교육원 입교대상자는 3월 10일까지 입산해야 한다. 입교를 원하는 사람은 교구본사나 교육원에 관련서류를 3월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2011-1800 **남동우 기자**

## 종단발전 공청회 연다

### 화엄회 3월3일 개최

조계종 중앙총회 화엄회(회장 성직)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종단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해 1월 21일까지 불교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다. 화엄회는 공청회 결과를 다양한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마론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징계사 시면·경감·복권의 정례화 시행 정책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제32대 집행부는 종정 예하의 뜻을 받들어 징계사에 대한 시면·경감·복권을 정례화하여 추진·시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승려로서의 본분과 자질에 어긋나고 중한 중벌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하여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철저히 수행정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비위 사실로 인한 징계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정진토록 하여 수징자에게 참회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징계 결정 이후에도 징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그 어떤 허물이 있는 자도 종단의 한 구성원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시기나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징계 당사자의 신청과 해당 기관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정기적으로 시면·경감·복권 절차를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징계사 시면·경감·복권의 정례화와 더불어 이후 승려 본연의 위의를 망각하거나 중한 중벌을 위배한 자에 대하여 더욱 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합당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종단의 징계와 시면 경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승가 위의를 바로 세우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합니다.

위와 같은 제32대 총무원 집행부의 결단에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한 전 종도들의 넓은 이해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불기 2550(2006)년 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불기2550(2006)년 부처님오신날 정기 사면·경감·복권 심사 신청 안내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제32대 총무원의 정례화 추진방침에 따라 금년 사면·경감·복권의 심사신청 요건 및 절차를 공고하오니, 해당 승려는 아래를 참조 하셔서 기한 내에 심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 행 명** : 불기2550년 부처님오신날 정기 사면·경감·복권
- **신청자격** : 1999년 1월 28일 이전 본종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집행 중이거나 복적 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본종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집행 중인 자
- **제출서류** : 징계확정 이후 현재까지 수행이력서 1부(현 거주지 및 연락처 필히 기재)
  - 신청 당사자의 호적등본(원적포함) 1부
  - 심사신청 원형서 1매
  - 반명함판 사진 1매
- **신청기간** : 2006년 2월 20일부터 동년 3월 10일까지(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 **신청서류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 02)2011-1834~1838 / Fax 02)735-0613

**청기 사면·경감·복권 시행의 참조사항**

- ▶ 사면·경감·복권은 종정예하의 고유권한으로서 중한·중벌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총무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총회의 동의 후 종정에에게 품신·제가 후 시행됩니다. 이에 부처님오신날 이전 중앙총회 동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시행이 다음해로 유보될 수 있습니다.
- ▶ 위 신청기한 내 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 대하여 호법부의 실질심사가 선행되고 총무원의 심사결과 결정사유가 있을 경우 금번 시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호법부에서 자체 실질심사 후 시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기 2550(2006)년 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